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1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14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3227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32275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아닌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참조).

한편,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하천부지와 같은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참조). 반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전체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용 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재산의 성립,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면서 작성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용 재산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의 효력,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